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06. 2. 28. 제정 판 (시행 2006. 3. 1.) → 2014. 9. 1. 개정 판 (시행 2014. 9. 1.)

바뀜 5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48/compare?from=107&to=108>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9:18:39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임과 권한) ①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무 총괄 2.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 3. 간사 임명 ②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자료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제3조(책임과 권한) ①_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무 총괄 2.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 3. 간사 임명 ②_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자료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_위원회는 <u>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u> 위원장을 포함하여 <u>10인</u>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u>기획처</u> 장으로 한다. <u>〈개정 2014-09-01〉</u> ②_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심의절차) ①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절차) ①_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_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_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정리 및 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에게 보고된 규정안은 행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9조(회의록 정리 및 보고) ①_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_총장에게 보고된 규정안은 행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①위원장"을 각각 "① 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②간사"를 "② 간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①모든"을 "① 모든"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②안건"을 "② 안건"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③규정안"을 "③ 규정안"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②총장"을 "② 총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